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

1. 정관변경사유

- 감사위원회의 폐지 및 비상근감사 선임에 따른 관련 제조항 정비

2. 주요 변경내용

가. 이사의 임기 변경

- 감사위원회 폐지 및 비상근 감사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의 임기관련 조항 수정
- 변경내용
비상근 감사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 감사의 임기 조항 신설

나. 이사의 직무

- 감사위원회에 보고 조문 삭제
- 변경내용
비상근 감사 선임에 따라 이사가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에게 보고 하도록 조문 수정

다. 위원회의 종류 수정

- 이사회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조항 삭제
- 변경내용
이사회내 위원회 목록에서 감사위원회를 삭제

라. 감사위원회 조항 수정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행업무 관련 조문 수정
- 변경내용
감사위원회의 구성 내역을 삭제하고 비상근 감사가 수행하여야하는 업무 및 임기 관련 조항을 신설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붙임 1>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2019.3.29. 시행)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30조 (생략)	제1조 ~ 제30조 (현행과 같음)	
<p>제31조(이사의 임기)</p> <p>① (생략)</p> <p>② <u>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u></p>	<p>제31조(이사의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삭제
<p>제34조(이사의 직무)</p> <p>① ~ ③ (생략)</p> <p>④ <u>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4조(이사의 직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u></p>	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변경
제35조 ~ 제39조 (생략)	제35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p>제40조(위원회)</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감사위원회</p> <p>3. ~ 4. (생략)</p>	<p>제40조(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4. (생략)</p>	감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변경
<p>제41조(감사위원회)</p> <p>① <u>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u></p> <p>②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u></p> <p>③ <u>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41조(감사)</p> <p><삭제></p> <p>② <u>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u></p> <p>③ <u>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삭제</p> <p>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p> <p>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2조 ~ 제45조 (생략)</p> <p>제46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신설)</p>	<p>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u>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u>로 한다.</p> <p>제42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p> <p>제46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정관은 2019. 3. 29일부터 시행한다.</p>	<p>감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 신설</p> <p>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p> <p>감사위원회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p>
---	--	---

[붙임1-1]

정 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정 관

제정 : 2010.01.19
개정 : 2010.03.03
개정 : 2012.05.24
개정 : 2013.05.23
개정 : 2019.03.29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amco Asset Management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무단위에 한한다.

1. 집합투자업
2. 투자매매업
3. 투자중개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얻어서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업무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 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 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 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2.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
이체업무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수탁업무
 6.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7.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8.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금융
위원회에 신고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 외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관계부처로부터의 적절한 인가·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외에 국내·외 별도의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mcofund.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정관변경 등)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 또는 해산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업무의 폐지
4.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

제 2 장 주 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백만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상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의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정으로써 본점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

제2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결격 사유) 이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 그 임기를 2년 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일시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사의 예산의 승인
2. 배당결의안의 주주총회의 제출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변경
4. 회사의 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5. 상법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들

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0조(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위원회
2. 삭 제 (2019.03.29.)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감사)

① 회사는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5 장 업 무

제42조(자산운용의 기본방침) ① 회사는 제2조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자산에 대한 투자, 운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행위준칙)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 운용, 관리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준칙 기타 제한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의 구분관리) 회사는 운영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운영자산 상호간 이익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4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적립금

2. 배당금

3.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금

5. 기타의 이익준비금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해 산

제50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및 판결

제 8 장 보 칙

제51조(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자본시장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52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본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의 설립을 추진해온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명칭의 대표자
(주)코람코자산신탁 110111-23598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문창모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3년도(제5기)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